

이 착 륙 장 설 치 및 관 리 기 준
일 부 개 정 안

2017. 9

국 토 교 통 부

(공 항 안 전 환 경 과)

1. 개정이유

경량항공기 형식을 감안한 육상 이착륙장 등급 (하위 4등급 및 동력 패러장 신설) 세부화와 미 반영된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수상 (水上) 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동력패러장, 착수대 등 추가되는 시설에 관한 용어 등을 정비함 (안 제2조)
- 나. 종전의 활주로 길이, 활주로 안전구역 및 보호구역의 길이 등에 따른 이착륙장 등급 구분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세분화 함 (안 제4조)
- 다. 수상구역, 착수대, 경사대 등 경량항공기 수상이착륙장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준 마련(안 제3장)
- 라. 동력패러장 및 수상이착륙장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안 제26조)
- 마. 이착륙장이 적합하게 관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수상이착륙장의 검사대상 시설 및 항목 근거 마련(안 제33조)
- 바. 시정조치 통보 후 조치결과 2개월 이내로 기한 명시(안 제35조)
- 사. 4등급 이착륙장 설치도면 마련(안 별표4)
- 아. 동력패러장 설치도면 마련(안 별표5)
- 자. 수상이착륙장 설치도면 마련(안 별표7)
- 차. 착수대 부표 설치도면 마련(안 별표8)

카. 수상 및 동력패러장 점검 항목 개선(안 별표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설정된**”을 “**경량항공기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을 “**활주로 미착 또는 과주, 이탈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시단·종단 밖으로**”를 “**시단·종단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동력패러장(Powered Parachute Landing Area)**”이란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의 이·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상 이착륙장의 일부로서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12. “**착수대(Sea Lane)**”란 경량항공기 등의 이수 및 착수 목적으로 수면에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13. “**착수대 보호구역(Sea Lane Protection Zone)**”이란 수상 및 지상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착수대 시단·종단에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14. “**유도수로(Taxi Channel)**”란 경량항공기등이 착수대 또는 경사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15. “**수상구역(Water areas)**”이란 경량항공기등의 이수, 착수, 이동 등을 위하여 수면에 설정된 구역으로서 수상이착륙장 내의 착수대, 유도수로, 선회구역, 경사대 등을 포함한다.

16. “선회수역(Turning basin)”이란 수상구역 내에서 경량항공기등이 이수 및 착수 등을 위해 안전하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착수대의 끝 부분에 위치한 일정 수역을 말한다.

17. “경사대(Slipways)”란 경량항공기를 수면에서 육지로 끌어 올리거나 육지에서 수면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경사진 시설물을 말한다.

18. “부표(Buoy)”란 착수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수면 위에 띄우는 부력표지를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이착륙장 등급) 활주로 길이, 활주로 안전구역 및 보호구역의 길이 등에 따라 <표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 이착륙장 등급

<표 1> 이착륙장 등급							
이착륙장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동력패러장	
						전(全)방향	양(兩)방향
활주로 길이	포장(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233m 이상	230~287m	173~229m	60~172m	중심 반경 45m 이상 원형(圓形)	60도 호(弧) 양방향 반경 45m 이상
	잔디	340m 이상	275~339m	200~274m	70~199m		
	비포장	313m 이상	250~312m	188~249m	65~187m		
활주로 폭	포장(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6m 이상	6m 이상	6m 이상	6m 이상	중심 반경 45m 이상 원형(圓形)	중심 양쪽 22.5m 이상
	비포장	10m 이상	10m 이상	10m 이상	10m 이상		
활주로 안전구역	길이(종단부터)	75m 이상	75m 이상	75m 이상	75m 이상	중심 반경 76m 이상 원형(圓形)	60도 호(弧) 양방향 반경 76m 이상
	폭(활주로 중심선 좌우)	10m 이상	10m 이상	10m 이상	10m 이상		중심 양쪽 38m 이상
활주로 보호구역 길이 ^a		1,000m	700m	300m	300m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활주로 보호구역 시점의 폭 ^b		16m	16m	16m	16m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활주로 보호구역 종점의 폭 ^c		45m	42m	36m	36m	해당 없음	해당 없음
a) 활주로 보호구역 길이는 활주로 시·종단에서 시작하여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 따른 외곽까지의 길이 b) 활주로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의 폭은 활주로 끝단의 활주로 중심선에서 좌우 양측의 거리 c) 활주로 보호구역이 끝나는 지점의 폭은 활주로 끝단으로부터 활주로 보호구역 끝나는 지점의 활주로 중심선에서 좌우 양측의 거리							

제5조의 제목 “(운항관련 시설)”을 “(풍향지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착륙장에는 공중과 지상 활주로”를 “경량항공기 등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공중과 지상”으로, “하며, 풍향지시기가 경량항공기의 이착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계류장의 설치) 이착륙장 내에서 계류장 설치시 다음 각호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경량항공기 비행경로 직하 또는 활주로 안전구역 제외
2. 무단출입 방지와 안전을 위해 울타리 및 경고문 게시

제7조(이착륙장 내의 물체 등) ① 이착륙장 내에 격납고 등 고정시설은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최소 15m 이상 이격(離隔)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연료 저장 시설은 활주로 안전구역 밖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8조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이착륙장의 규모) ① 이착륙장 활주로 길이 및 폭은 <표1>의 최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동력패러장은 전(全)방향 및 양(兩)방향으로 분류하며, 활주로 길이 및 폭은 <표1>의 최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양(兩)방향동력패러장은 주간(晝間)에 주바람 방향이 95%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활주로 설계등)”을 “(활주로 길이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활주로 길이 산정) 활주로 길이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하고자 하는 경량항공기등의 성능 및 운항 시 중량
2. 기후조건, 지상풍 및 기온
3. 경사 및 표면조건 등과 같은 활주로 특성
4. 이착륙장 위치(이착륙장 표고) 등

제9조 앞에 “제3장 활주로 설치기준”을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활주로 안전구역) ① 활주로 안전구역은 활주로 종단과 좌우 측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활주로 안전구역의 길이 및 폭은 <표1>의 최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활주로 시단이 영구적으로 이설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활주로 안전 구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활주로 표면은 물이 쉽게 빠질 수 있도록 정지(整地)되어 있어야 한다.
- ② 경량항공기등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평탄하고 견고

해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활주로 보호구역) ① 활주로 보호구역은 활주로 종단에 사다리꼴 모양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활주로 보호구역의 길이, 보호구역 시점 및 종점의 폭은 <표1>의 최소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활주로 보호구역의 경사도는 활주로 시단·종단의 가장자리에서 시작하여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을 따라 15(수평) 대 1(수직)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활주로 보호구역)”을 “(활주로 시단의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활주로 보호구역의 경사면에 경량항공기등의 착륙에 방해되는 장애물이 없는 경우 활주로 시단은 활주로 표면의 끝에 위치한다.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활주로 보호구역에 경량항공기등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시단을 이설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활주로 시단을 이설하는 경우 기존 활주로에서 운항하는 경량항공기 종류, 기상여건 등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활주로 시단이 영구적으로 이설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활주로 안전구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활주로 표지 일반) 활주로 표지는 활주로 표면이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에는 흰색 페인트 또는 도로용 플라스틱 삼각뿔과 같은 흰색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들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활주로 명칭표지) 활주로 명칭은 활주로 표면이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 활주로 양쪽 시단 지역에 활주로 번호를 흰색으로 글자 길이 2m, 글자 폭 1m, 선두께 30cm, 자간 50cm 간격으로 표시한다. (별표 6 참조)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27조 및 제28조로 하고,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활주로 옆선 표지) ① 활주로 옆선 표지(Runway side stripe marking)는 활주로 표면이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 길이 2m, 폭 50cm 직사각형으로 활주로의 평행하게 가장자리에 30m 간격으로 표시한다. (별표 6 참조)

② 양(兩)방향동력패러장의 직선부분 표면이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 길이 2m, 폭 50cm 직사각형으로 활주로의 평행하게 가장자리에 20m 간격으로 표시한다. (별표 5 참조)

제17조(활주로 시단 표지 등) ① 시단표지는 활주로 표면이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 활주로 시단에 길이 10m 이상, 폭 30cm 이상 직선으로 표시한다. (별표 6 참조)

② 시단이설 표지는 활주로 표면이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 길이 10m 이상, 폭 30cm 이상 점선으로 표시한다. (별표 6 참조)

③ 전(全)방향동력패러장 활주로의 가장자리는 폭 20cm 이상으로 표시한다. (별표 5 참조)

④ 양(兩)방향동력패러장 활주로 가장자리의 곡선부분은 폭 20cm 이상으로 표시한다. (별표 5 참조)

제28조(중전의 제17조)제5호 중 “**짐승이 활주로**”를 “**선박 등 장애물이 활주로 또는 착수대**”로 한다.

제18조 앞에 “제3장 수상이착륙장 시설기준”을 삽입한다.

제18조의 제목 “(장애물의 통제)”를 “(수상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상구역 내에는 경량항공기등의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제1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박 등에 의해 큰 파도가 발생하는 장소는 수상구역으로 설정하지 않아야 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한다.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로 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환경 요소) 조류보호구역 또는 조류집단이 대규모로 서식하는 지역에는 수상이착륙장의 설치를 피해야 하며, 소음, 야생 동물, 문화재 등의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20조(착수대 설치 장소) ① 착수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야 한다.

1. 평수위(1년을 통하여 185일은 이보다 저하하지 않는 수위) 또는 평균 최저 간조면(MLLWL : Mean Lowest Low Water Level)에서 수심은 1m 이상
 2. 착수대보호구역 및 착수대 확보 여부
 3. 주변 지역의 선박 등 수상 교통량으로 인한 장애여부
 4. 안개, 바람 등 기상상태
 5. 비행에 필요한 공역 확보 여부
 6.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소음피해 가능성
 7. 유수의 상태, 수면의 높이, 파도 상태, 수면의 부유물 등의 영향
 8. 자연환경보호지역과 낚시터 등으로부터 안전운항 장애 여부
 9. 암초 등 장애물 존재 여부
 10. 주변지역의 기존 장애물과 예상장애물 여부
 11. 해안선, 항구, 선착장으로부터 300m 이상 이격
- ② 착수대는 해당 지역의 유속이 초속 1.53미터 미만인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2조(종전의 제21조)제2항 중 “별표 6”을 “별표 9”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착수대의 규모) ① 착수대는 양(兩)방향착수대 및 전(全)방향착수대로 구분하며, 양(兩)방향착수대는 주간(晝間)에 주바람 방향이 95%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② 양(兩)방향착수대의 길이는 350m 이상 폭은 40m 이상 (별표 7 참조)

전(全)방향착수대는 중심으로부터 반경 175m 이상 (별표 7 참조)

제22조 앞에 “제5장 이착륙장 검사 및 시정조치”를 삭제한다.

제33조(중전의 제22조)제1항 중 “별표 6”을 “별표 9”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연료저장시설이 있을 경우”를 “연료저장시설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수상이착륙장의 검사대상 시설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착수대 및 부표(浮標) 관리상태
2. 착수대 보호구역의 관리상태
3. 운항시설 및 비상계획 관리상태
4. 연료저장시설의 관리상태
5. 기타 검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착수대 보호구역) ① 양(兩)방향착수대 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兩)방향착수대 보호구역은 착수대 시단 또는 종단으로부터 길이 350m 이상 폭 146m 이상, 착수대 좌우 외측으로 53m이상으로 사각형 형태
2. 양(兩)방향착수대 보호구역의 경사도는 착수대 시단·종단의 가장

자리에서 시작하여 착수대 중심선의 연장선을 따라 15(수평) 대 1(수직)로 하며, 활주면 좌우 외측의 착수대 보호구역의 경사도는 10(수평) 대 3(수직)으로 한다

② 전(全)방향착수대 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全)방향착수대 보호구역은 착수대 중심으로부터 반경 525m 이상
2. 전(全)방향착수대 보호구역의 경사도는 착수대 가장자리에서 시작하여 외곽으로 15(수평) 대 1(수직)로 한다.

제34조(중전의 제23조)제1항 중 “**통보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고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착수대 표시) ① 착수대 경계 표시를 위하여 착수대 외곽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여 부표(浮標)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8 참조)
② 부표(浮標)는 밧줄이나 쇠사슬 등을 사용하여 수면 밑 바닥에 고정시켜야 하고, 경량항공기가 비행장주에서 쉽게 윤곽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제35조(중전의 제24조)제2항 본문 중 “**그**”를 “**2개월 이내 그**”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경사대) ① 경사대는 경량항공기를 수면에서 육지로 끌어 올리거나 육지에서 수면으로 끌어 내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경사대는 경량항공기등의 인양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2. 경사대는 방파제 등 육지 구조물에 고정시켜야 한다.
3. 경사대의 경사도는 17% 이하로 하여야 한다. (경사도와 각도)
4. 경사대 폭은 최소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풍향지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지면에 풍향지시기(Wind sock) 설치가 가능한 경우 공중과 지상에서 착수대가 잘 보이고, 대표 풍향과 풍속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지면에 풍향지시기를 설치한다.

제2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풍향지시기는 흰색(White) 바탕에 붉은색(Red) 또는 황적색(Orange)을 사용하여 공중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며, 지지대의 높이는 2.5m 이상 3m 이하로 설치한다.

제4장에 제26조, 제29조 및 제3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일반사항) ① 경량항공기의 이륙(수) 또는 착륙(수) 장면을 녹화할 수 있는 CCTV 설치를 권장하며 녹화자료는 최소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수상 및 수륙양용 경량항공기는 수상에서 계류 및 정박할 수 없다.
- ③ 육상이착륙장의 경우 계류장, 사무실 내부 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이착륙장의 활주로 제원, 활주로안전구역, 활주로보호구역, 장주 패턴

등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수상이착륙장의 경우 경사대 부근, 사무실 내부 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착수대 제원, 착수대보호구역, 장주 패턴 등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격납고와 같은 영구적인 건물이 없는 경우, 소화장비, 구급장비, 항공일지(Flight log)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임시 막사, 트레일러하우스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⑥ 경량항공기등의 엔진에 시동을 걸 때는 주변에 소화장비를 비치한다.

제29조(장애물의 통제) ① 이착륙장 설치·관리자는 경량항공기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제28조에 따라 활주로 안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상이착륙장 설치·관리자는 경량항공기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장애물이 없도록 수상구역을 관리 하여야 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계류장(Apron)”이란 이착륙장 내에서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화물의 적재·적하, 급유, 주기, 제·방빙 및 정비 등의 목적으로 <u>설정된</u> 구역을 말한다.</p> <p>4. “활주로 안전구역(RSA : Runway Safety Area)”이란 경량항공기등이 <u>활주로를 이탈하는</u> 경우에 경량항공기등과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를 말한다.</p> <p>5. “활주로 보호구역(RPZ : Runway Protection Zone)”이란 지상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활주로 <u>시단·종단 밖으로</u>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p> <p>6. ~ 10. (생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 ----- ----- <u>경량항공기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u> --.</p> <p>4. ----- ----- ----- <u>활주로 미착 또는 과주, 이탈하는</u> ----- ----- -----.</p> <p>5. ----- ----- ----- ----- <u>시단·종단에</u> -----.</p> <p>6. ~ 10. (현행과 같음)</p> <p>11. <u>“동력패러장(Powered Parachute Landing Area)”</u>이란 동</p>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의 이·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상 이착륙장의 일부로서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12. “착수대(Sea Lane)”란 경량항공기 등의 이수 및 착수 목적으로 수면에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13. “착수대 보호구역(Sea Lane Protection Zone)”이란 수상 및 지상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착수대 시단·종단에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14. “유도수로(Taxi Channel)”란 경량항공기등이 착수대 또는 경사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15. “수상구역(Water areas)”이란 경량항공기등의 이수, 착수, 이동 등을 위하여 수면에 설정된 구역으로서 수상이착륙장 내의 착수대, 유도수로, 선회수역, 경사대 등을 포함한다.

16. “선회수역(Turning basin)”이란 수상구역 내에서 경량항

<신 설>

<신 설>

제4조(이착륙장 등급) 이착륙장은 활주로 길이, 활주로 안전구역 및 보호구역의 길이 등에 따라 1등급에서 3등급까지로 구분하며, 등급별 이착륙장의 설치도면은 별표 1에서 별표 3까지와 같다.

공기등이 이수 및 착수 등을 위해 안전하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착수대의 끝 부분에 위치한 일정 수역을 말한다.

17. “경사대(Slipways)”란 경량 항공기를 수면에서 육지로 끌어 올리거나 육지에서 수면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경사진 시설물을 말한다.

18. “부표(Buoy)”란 착수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수면 위에 띄우는 부력표지를 말한다.

제4조(이착륙장 등급) 활주로 길이, 활주로 안전구역 및 보호구역의 길이 등에 따라 <표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 이착륙장 등급

제5조(운항관련 시설) ① 이착륙 장애는 공중과 지상 활주로에서 잘 보이고, 대표 풍향과 풍속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장소에 풍향 지시기(Wind sock)를 설치하여야 하며, 풍향지시기가 경량항공기의 이착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③ 풍향지시기는 경량항공기의 이착륙을 방해하지 않고, 나무나 건물 또는 대표 풍향과 풍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형에 가까이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계류장, 사무실 내부 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장주 패턴에 대한 그림과 설명을 게시할 것을 권장한다.

<표 1> 이착륙장 등급

이착륙장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동력비행장		
					전(全)방향	일(一)방향	
활주로 길이	포장(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230m 이상	230~287 m	173~229 m	60~172 m	중심 반경 45m 이상 원형(圓形)	60도 원(圓) 방향 반경 45m 이상	
	잔디	275~339 m	200~274 m	70~199 m			
	비포장	313m 이상	250~312 m	188~249 m			65~187 m
활주로 폭	포장(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6m 이상	6m 이상	6m 이상	6m 이상	중심 반경 45m 이상 원형(圓形)	중심 양쪽 22.5m 이상
	비포장	10m 이상	10m 이상	10m 이상	10m 이상		
활주로 안전구역	길이 (總距離)	75m 이상	75m 이상	75m 이상	75m 이상	중심 반경 76m 이상 원형(圓形)	60도 원(圓) 방향 반경 76m 이상 중심 양쪽 38m 이상
	폭 (활주로 중 심선 좌우)	10m 이상	10m 이상	10m 이상	10m 이상		
	활주로 길이 ^{a)}	1,000m	700m	300m	300m		
활주로 시점의 폭 ^{b)}	16m	16m	16m	16m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활주로 시점의 폭 ^{c)}	45m	42m	36m	36m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a) 활주로 보호구역 길이는 활주로 시·종단에서 시작하며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 따른 외곽까지의 길이
b) 활주로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의 폭은 활주로 끝단의 활주로 중심선에서 좌우 양측의 거리
c) 활주로 보호구역이 끝나는 지점의 폭은 활주로 끝단으로부터 활주로 보호구역 끝나는 지점의 활주로 중심선에서 좌우 양측의 거리

제5조(풍향지시기) ① 경량항공기 등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공중과 지상-----

-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⑤ 격납고와 같은 영구적인 건물이 없는 경우, 소화장비, 구급장비, 항공일지(Flight log)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임시 막사, 트레일러하우스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⑥ 이착륙장의 활주로 길이·폭, 활주로안전구역 및 보호구역 길이·폭 등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경량항공기등의 엔진에 시동을 걸 때는 주변에 소화장비 비치 를 권장한다.

제6조(계류장) 계류장을 설치하는 경우, 계류장을 항공기 비행경로의 아래 또는 활주로 안전구역 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며, 무단출입 방지와 안전을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고 경고문을 게시할 것을 권장한다.

제7조(CCTV 설치)① 이착륙장 설치·관리자는 경량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 장면을 녹화할 수 있는 CCTV 설치를 권장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6조(계류장의 설치) 이착륙장 내에서 계류장 설치시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경량항공기 비행경로 직하 또는 활주로 안전구역 제외
2. 무단출입 방지와 안전을 위 해 울타리 및 경고문 게시

제7조(이착륙장 내의 물체 등)① 이착륙장 내에 격납고 등 고정 시설은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최소 15m 이상 이격(離隔)하여

다.

② 이착륙장 설치·관리자는 제 1항에 따라 설치된 CCTV의 녹화 자료를 최소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① 이착륙장에 건물 및 격납고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최소 15m 이상 이격(離隔)하여 설치한다.

② 이착륙장에서 연료를 공급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소방 및 환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연료저장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활주로 안전구역 밖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활주로 설치기준

<신 설>

설치하여야 한다.

② 연료 저장 시설은 활주로 안전구역 밖에 설치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9조(이착륙장의 규모)① 이착륙장 활주로 길이 및 폭은 <표1>의 최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동력패러장은 전(全)방향 및 양(兩)방향으로 분류하며, 활주로 길이 및 폭은 <표1>의 최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활주로 설계등)① 활주로를 설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하고자 하는 경량항공기 등의 성능 및 운항 시 중량
2. 기후조건, 지상풍 및 기온
3. 경사 및 표면조건 등과 같은 활주로 특성
4. 이착륙장 위치(이착륙장 표고) 등

② 활주로 표면은 물이 쉽게 빠질 수 있도록 정지(整地)되어 있어야 한다.

③ 이착륙장은 경량항공기등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평탄하고 견고해야 한다.

제10조(활주로 길이 및 폭)① 이착륙장 등급에 따른 활주로 길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등급 이착륙장 : 잔디 340m 이상(포장 288m 이상, 비포장 313m 이상)

③ 양(兩)방향동력패러장은 주간(晝間)에 주바람 방향이 95%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활주로 길이 산정) 활주로 길이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하고자 하는 경량항공기 등의 성능 및 운항 시 중량
2. 기후조건, 지상풍 및 기온
3. 경사 및 표면조건 등과 같은 활주로 특성
4. 이착륙장 위치(이착륙장 표고) 등

<삭 제>

2. 2등급 이차륙장 : 잔디 275m 이상 339m 이하(포장 230m 이상 287m 이하, 비포장 250m 이상 312m 이하)

3. 3등급 이차륙장 : 잔디 200m 이상 274m 이하(포장 173m 이상 229m 이하, 비포장 188m 이상 249m 이하)

② 활주로 폭은 비포장·잔디·석분의 경우에는 최소 10m 이상,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최소 6m 이상이어야 한다.

<신 설>

제11조(활주로 표면 및 강도)<신 설>

제11조(활주로 안전구역)① 활주로 안전구역은 활주로 종단과 좌우 측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활주로 안전구역의 길이 및 폭은 <표1>의 최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활주로 시단이 영구적으로 이설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활주로 안전구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활주로 표면 및 강도)① 활주로 표면은 물이 쉽게 빠질

①·② (생략)

제12조(활주로 안전구역)① 활주로 안전구역은 활주로 시단 또는 종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구역의 확보를 위해 필요시 제14조와 같이 활주로 시단 이설이 가능하며, 종단에 설치한 안전구역은 활주로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활주로 안전구역의 길이는 활주로 시단 또는 종단으로부터 75m 이상, 폭은 활주로 중심선에서 10m 이상이어야 한다.

③ 활주로 안전구역의 표면은 경량항공기등의 이착륙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활주로 안전구역에는 활주로 및 운항목적의 표지를 제외하고 구조물·도로·주기장 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활주로 보호구역)① 활주

수 있도록 정지(整地)되어 있어야 한다. ② 경량항공기등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평탄하고 견고해야 한다.

③·④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12조(활주로 보호구역)① 활주로 보호구역은 활주로 종단에 사다리꼴 모양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활주로 보호구역의 길이, 보호구역 시점 및 종점의 폭은 <표1>의 최소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활주로 보호구역의 경사도는 활주로 시단·종단의 가장자리에서 시작하여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을 따라 15(수평) 대 1(수직)로 한다.

제13조(활주로 시단의 위치) ①

로 보호구역은 활주로 시단·중단에 설치를 권장하고, 보호구역의 길이와 폭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등급 이착륙장 : 활주로 보호구역 길이는 활주로 시단·중단에서 시작하여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을 따라 1,000m까지로 하며, 보호구역의 시작되는 지점의 폭은 활주로 끝단의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방향으로 16m, 보호구역의 끝은 활주로 끝단으로부터 1,000m 되는 지점에서 폭 45m로 양측으로 벌어져 사다리꼴 모양을 이룬다.

2. 2등급 이착륙장 : 활주로 보호구역 길이는 활주로 시단·중단에서 시작하여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을 따라 700m까지로 하며, 보호구역의 시작되는 지점의 폭은 활주로 끝단의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방향으로 16m, 보호구역의 끝은 활주로 끝단으로부터 700m 되는 지점에서 폭 42m로

활주로 보호구역의 경사면에 경량항공기등의 착륙에 방해되는 장애물이 없는 경우 활주로 시단은 활주로 표면의 끝에 위치한다.

양측으로 벌어져 사다리꼴 모양을 이룬다.

3. 3등급 이착륙장 : 활주로 보호구역 길이는 활주로 시단·종단에서 시작하여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을 따라 300m 까지로 하며, 보호구역의 시작되는 지점의 폭은 활주로 끝단의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방향으로 16m, 보호구역의 끝은 활주로 끝단으로부터 300m 되는 지점에서 폭 36m로 양측으로 벌어져 사다리꼴 모양을 이룬다.

<신 설>

③ 활주로 보호구역의 경사도는 활주로 시단·종단의 가장자리에서 시작하여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을 따라 15(수평) 대 1(수직)로 한다.

<신 설>

② 활주로 보호구역에 경량항공기등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시단을 이설하여야 한다.

③ 활주로 시단을 이설하는 경우 기존 활주로에서 운항하는 경량항공기 종류, 기상여건 등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④ 활주로 시단이 영구적으로 이설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활주

제14조(활주로 시단 이설)① 활주로 보호구역의 경사면에 경량항공기등의 착륙에 방해되는 장애물이 없는 경우 활주로 시단은 활주로 표면의 끝에 위치한다.

② 경량항공기등이 착륙하는 활주로 보호구역에 제거 또는 이동시키거나 낮출 수 없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와 활주로 안전구역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활주로 시단을 이설한다.

③ 활주로 시단을 이설했을 경우 이설된 시단의 뒤쪽에 있는 활주로는 양 방향 이륙시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이설된 시단의 반대 방향에서 착륙하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제15조(활주로등 표시)① 활주로 표시는 활주로 표면이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에는 흰색 페인트 또는 도로용 플라스틱 삼각뿔과 같은 흰색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들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활주로 표면이 콘크

로 안전구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활주로 표지 일반) 활주로 표지는 활주로 표면이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에는 흰색 페인트 또는 도로용 플라스틱 삼각뿔과 같은 흰색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들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활주로 명칭표지) 활주로 명칭은 활주로 표면이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 활주로 양쪽 시단 지역에 활주로 번호를 흰색으로 글자 길이 2m, 글자 폭 1m, 선 두께 30cm, 자간 50cm 간격으로 표시한다. (별표 6 참조)

리트 포장·잔디·비포장·석분인 경우 경량항공기등이 착륙시 조종사가 활주로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활주로 표면이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 활주로 시단 및 종단에 흰색의 직사각형 형태로 설치하고 길이 10m 이상, 폭 30cm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별표4 참조)

② 활주로 명칭은 활주로 표면이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 활주로 양쪽 시단지역에 활주로 번호를 백색으로 글자 길이 2m, 글자 폭 1m, 선 두께 30cm, 자간 50cm 간격으로 표시한다. 다만, 활주로 표면이 콘크리트 포장·잔디·비포장·석분인 경우 경량항공기등이 착륙시 조종사가 활주로 명칭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활주로 옆선 표지(Runway side stripe marking)는 활주로 표면이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 길이 2m, 폭 50cm 직사각형으

로 활주로와 평행하게 가장지리에 30m 간격으로 표시한다. 다만, 활주로 표면이 콘크리트 포장·잔디·비포장·석분인 경우 경량항공기등이 착륙시 조종사가 활주로 옆선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활주로 시단이설 표시는 활주로 표면이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 점선으로 표시하고, 콘크리트포장·비포장·잔디·석분인 경우에는 경량항공기등이 착륙시 조종사가 시단이설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활주로 옆선 표지)① 활주로 옆선 표지(Runway side stripe marking)는 활주로 표면이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 길이 2m, 폭 50cm 직사각형으로 활주로와 평행하게 가장자리에 30m 간격으로 표시한다. (별표 6 참조)

② 양(兩)방향동력패러장의 직선부분 표면이 아스팔트 포장인

제16조 (생 략)

<신 설>

제17조(이착륙장 관리) 이착륙장
설치·관리자는 경량항공기등
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착륙장을 관리하여

경우 길이 2m, 폭 50cm 직사각
형으로 활주로와 평행하게 가장
자리에 20m 간격으로 표시한
다. (별표 5 참조)

제27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7조(활주로 시단 표지 등)①

시단표지는 활주로 표면이 아스
팔트 포장인 경우 활주로 시단
에 길이 10m 이상, 폭 30cm 이
상 직선으로 표시한다. (별표 6
참조)

② 시단이설 표지는 활주로 표
면이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 길
이 10m 이상, 폭 30cm 이상 점
선으로 표시한다. (별표 6 참조)

③ 전(全)방향동력패러장 활주
로의 가장자리는 폭 20cm 이상
으로 표시한다. (별표 5 참조)

④ 양(兩)방향동력패러장 활주
로 가장자리의 곡선부분은 폭 2
0cm 이상으로 표시한다. (별표
5 참조)

제28조(이착륙장 관리) -----

야 한다.

1. ~ 4. (생략)

5.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람 또는 짐승이 활주로 표면에 없음을 확인할 것

6. (생략)

<신설>

제18조(장애물의 통제) 이착륙장 설치·관리자는 경량항공기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활주로 안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5. -----
----- 선박 등 장애물이 활주로 또는 착수대 --

6. (현행과 같음)

제3장 수상이착륙장 시설기준

제18조 (수상구역) ① 수상구역 내에는 경량항공기등의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② 선박 등에 의해 큰 파도가 발생하는 장소는 수상구역으로 설정하지 않아야 한다.

제19조(환경 요소) 조류보호구역 또는 조류집단이 대규모로 장기간 서식하는 지역에는 수상이착륙장의 설치를 피해야 하며, 소음, 야생 동물, 문화재 등의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20조(착수대 설치 장소)① 착수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평수위(1년을 통하여 185일

은 이보다 저하하지 않는 수위) 또는 평균 최저 간조면(MLLWL : Mean Lowest Low Water Level)에서 수심은 1m 이상

2. 착수대보호구역 및 착수대 확보 여부

3. 주변 지역의 선박 등 수상 교통량으로 인한 장애여부

4. 안개, 바람 등 기상상태

5. 비행에 필요한 공역 확보 여부

6.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소음피해 가능성

7. 유수의 상태, 수면의 높이, 파도 상태, 수면의 부유물 등의 영향

8. 자연환경보호지역과 낚시터 등으로부터 안전운항 장애 여부

9. 암초 등 장애물 존재 여부

10. 주변지역의 기존 장애물과 예상장애물 여부

11. 해안선, 항구, 선착장으로부터 300m 이상 이격

② 착수대는 해당 지역의 유속

제19조 · 제20조 (생략)

<신설>

제21조(자체 안전점검)①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는 별표 6 점검표에 따라 시행하며, 점검표에는 점검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장 이착륙장 검사 및
시정조치

<신설>

이 초속 1.53미터 미만인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0조 · 제31조 (현행 제19조 및
제20조와 같음)

제21조(착수대의 규모)① 착수대
는 양(兩)방향착수대 및 전(全)
방향착수대로 구분하며, 양(兩)
방향착수대는 주간(晝間)에 주
바람 방향이 95% 이상인 경우
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② 양(兩)방향착수대의 길이는
350m 이상 폭은 40m 이상 (별
표 7 참조)

전(全)방향착수대는
중심으로부터 반경 175m 이상
(별표 7 참조)

제32조(자체 안전점검)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표 9 -----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22조(착수대 보호구역)① 양

(兩)방향착수대 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兩)방향착수대 보호구역은 착수대 시단 또는 종단으로부터 길이 350m 이상 폭 146m 이상, 착수대 좌우 외측으로 53m이상으로 사각형 형태

2. 양(兩)방향착수대 보호구역의 경사도는 착수대 시단·종단의 가장자리에서 시작하여 착수대 중심선의 연장선을 따라 15(수평) 대 1(수직)로 하며, 활주면 좌우 외측의 착수대 보호구역의 경사도는 10(수평) 대 3(수직)으로 한다

② 전(全)방향착수대 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全)방향착수대 보호구역은 착수대 중심으로부터 반경 525m 이상

2. 전(全)방향착수대 보호구역의 경사도는 착수대 가장자리에서 시작하여 외곽으로 15(수평) 대 1(수직)로 한다.

제22조(검사 및 대상) ① 지방항

제33조(검사 및 대상) ① -----

공청장은 이착륙장이 이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6 점검표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한 이착륙장의 검사대상 시설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연료저장시설이 있을 경우 관리상태

6. (생략)

<신설>

<신설>

----- 별표 9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연료저장시설의 -----

6.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의한 수상이착륙장의 검사대상 시설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착수대 및 부표(浮標) 관리 상태

2. 착수대 보호구역의 관리상태

3. 운항시설 및 비상계획 관리 상태

4. 연료저장시설의 관리상태

5. 기타 검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

제23조(착수대 표시)① 착수대 경계 표시를 위하여 착수대 외곽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여

제23조(검사계획 수립 및 보고)

① 지방항공청장은 이착륙장 설치·관리자에게 검사대상, 검사일자 및 검사관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 시행일 7일 전까지 통보한다.

② (생략)

③ 지방항공청장은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을 명시하여 이착륙장 설치·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신설>

부표(浮標)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8 참조)

② 부표(浮標)는 밧줄이나 쇠사슬 등을 사용하여 수면 밑 바닥에 고정시켜야 하고, 경량항공기가 비행장주에서 쉽게 윤곽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제34조(검사계획 수립 및 보고)

① -----

-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경사대)① 경사대는 경량항공기를 수면에서 육지로 끌어올리거나 육지에서 수면으로 끌어내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경사대는 경량항공기등의 인양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2. 경사대는 방파제 등 육지 구조물에 고정시켜야 한다.

3. 경사대의 경사도는 17% 이하로 하여야 한다. (경사도와 각도)

4. 경사대 폭은 최소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시정조치)① (생략)

②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시정조치를 통보받은 이착륙장 설치·관리자는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조치계획을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제35조(시정조치)① (현행과 같음)

② -----

----- 2개월 이내 그 -----
-----.

-----.

제25조(풍향지시기) ① 지면에 풍향지시기(Wind sock) 설치가 가능한 경우 공중과 지상에서 착수대가 잘 보이고, 대표 풍향과 풍속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14일까지로 한다.

<신 설>

<신 설>

지면에 풍향지시기를 설치한다.

② 풍향지시기는 흰색(White) 바탕에 붉은색(Red) 또는 황적색(Orange)을 사용하여 공중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며, 지지대의 높이는 2.5m 이상 3m 이하로 설치한다.

제26조(일반사항)① 경량항공기의 이륙(수) 또는 착륙(수) 장면을 녹화할 수 있는 CCTV 설치를 권장하며 녹화자료는 최소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상 및 수륙양용 경량항공기는 수상에서 계류 및 정박할 수 없다.

③ 육상이착륙장의 경우 계류장, 사무실 내부 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이착륙장의 활주로 제원, 활주로안전구역, 활주로 보호구역, 장주 패턴 등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수상이착륙장의 경우 경사대 부근, 사무실 내부 또는 눈에 잘

떨는 곳에 착수대 제원, 착수대 보호구역, 장주 패턴 등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격납고와 같은 영구적인 건물이 없는 경우, 소화장비, 구급장비, 항공일지(Flight log)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임시 막사, 트레일러하우스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⑥ 경량항공기등의 엔진에 시동을 걸 때는 주변에 소화장비를 비치한다.

<신 설>

제29조(장애물의 통제)① 이착륙장 설치·관리자는 경량항공기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제28조에 따라 활주로 안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상이착륙장 설치·관리자는 경량항공기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장애물이 없도록 수상구역을 관리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

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